

#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3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  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옥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 이성배, 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3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- 특히 직전 연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, 누적 봉사시간이 많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혜택 및 근조기 지원 등 실질적인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,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 제6호)
- 나.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 일부 항목을 누적 10,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한정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함(안 제10조의4 제2항 단서)

다. 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위한  
혜택 지원 및 근조기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10조의4제2항제4호  
및 제5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우수자원봉사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.

가.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

나.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,000시간 이상인 자

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은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

제10조의4제2항제2호 중 “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”를 “우수자원봉사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

5. 근조기 지원

6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“우수자원봉사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,000시간 이상인 자</u></p>
<p>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누적 10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은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우수자원봉사자 -----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 략)

4.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

5. 근로기 지원

6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
는 지원

③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, 누적 봉사시간이 많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혜택 및 근조기 지원 등 실질적 예우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 참여 및 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서울특별시 관련부서(행정국 시민협력과) 확인 결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혜택과 근조기 지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·직계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<sup>1)</sup>과 동일하며, 우수자원봉사자수는 약 400명(2025년 기준)이라는 점, 근조기 지원이 필요한 장례식 등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권 봉 수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건강검진 혜택 :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협약 검진기관에서 서울시 공무원 검진패키지 가격으로 검진 가능(수검자 비용 부담),  
근조기 지원 :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 사망 시 배송업체와 단가계약을 통해 근조기를 장례식장 등에 배송회수